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헌장

<명칭개정 2005.12.29.>

(학규분류기호: 0101)

제정 2003. 10. 22.

개정 2005. 12. 29.
2008. 3. 20.
2010. 3. 30.
2013. 6. 25.
2017. 3. 21.
2017. 8. 2.
2017. 12. 20.
2020. 8. 28.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혁신을 주도해 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우수 인력, 연구 지식과 경험, 연구시설 등을 활용해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뜻을 모아 22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003년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창의적인 과학기술인들이 유망한 과학도들과 함께 숨쉬고 성장함으로써 학술·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현장 중심의 수요 지향적 교육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은 물론 전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선도하여 우리 학생들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지적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세계적인 과학기술인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설립 역사와 책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 헌장을 제정, 선언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목적)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설립연구기관”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2조(교육목표) 대학원대학은 학제 간 신생 융합기술 분야의 현장중심 교육과 연구 활동을 통하여 핵심·원천기술의 발전과 산업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실천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양성을 그 목표로 한다.

제2장 교육과정

제3조(특성화 방안) 대학원대학은 제2조에 의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방침을 정한다.<개정 2017.12.20.>

1. 설립연구기관의 인력, 연구시설 및 장비, 연구 경험 등 적극 활용<개정 2020.8.28.>
2. 신생·첨단·융합기술에 대한 다학제적 교육 실시<개정 2020.8.28.>
3. 연구과제 참여, 국내외 인턴십, 세미나 등 현장연구 중심 전공교육 실시<개정 2020.8.28.>
4.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영어강의 및 온라인강의 권장<개정 2020.8.28.>
5. 연구개발 기획 관리, 과학기술 정책 참여 및 산업계와의 교류 기회 제공, 지원<개정 2020.8.28.>

제4조(개설학부) 대학원대학에는 자연과학계열의 이학부와 공학계열의 공학부를 둔다.

제5조(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육과정은 일반강좌, 전공강좌, 현장연구, 세미나 등의 교과목을 편성하고, 이수과목은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현장연구중심 융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개정 2020.8.28.>

제3장 교육여건

제6조(교원 확보) 대학원대학은 이 대학원대학을 신생융합기술 전문대학원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원으로 확보한다.<개정 2017.12.20.>

1. 설립연구기관의 연구원
2. 해당분야에서 국내외 연구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7조(시설 확보) 대학원대학은 교육 및 연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각종 시설 및 장비 등을 확보한다.<개정 2020.8.28.>

제8조(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대학원대학은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립연구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한다.

제4장 학사관리

제9조(학생선발) 대학원대학은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를 반영하여 학생선발 기준을 마련하고, 학생의 역량을 충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개정 2020.8.28.>

제10조(학생정원관리) 대학원대학은 학위과정의 학생정원을 전공별 수요전망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조정한다.<개정 2020.8.28.>

제11조(수업연한) 대학원대학은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 2년,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은 4년으로 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0.3.30., 2020.8.28.>

제12조(학기) 대학원대학의 학기는 연간 2학기로 하되,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8.28.>

제13조(대학 간 학술교류 등) 대학원대학은 국내외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인적교류, 학점교류, 학술·문화교류 등을 적극 추진한다.<개정 2020.8.28.>
1.~4. <삭제 2020.8.28.>

제5장 대학원대학운영

제1절 인사관리

제14조(교직원 채용기준) ① 대학원대학은 세계적 수준의 학술·연구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각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를 교원으로 임용한다.<개정 2017.12.20., 2020.8.28.>
1.~2. <삭제 2020.8.28.>
② 대학원대학은 대학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능력있는 직원을 채용한다.<신설 2020.8.28.>

제15조(교직원 채용절차 등) ① 교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임면한다.<개정 2020.8.28.>
② 직원은 총장이 임면한다.<개정 2020.8.28.>

제16조(교원평가) 대학원대학은 교원에 대하여 교수, 학생지도·상담, 교과내용의 개발, 학술연구 등에서의 업적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심의·평가한다.

제17조(교원의 질 제고계획) 대학원대학은 교원의 교육 및 연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의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교육방법 및 교재 개발을 지원하며, 국내외 학술연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교수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1.~4. <삭제 2020.8.28.>

제2절 재 정

제18조(재정확보 방안) 대학원대학의 재정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다음 각 호로 충당한다.

1. 등록금
2. 설립연구기관 분담금
3. 정부출연금
4. 연구용역수입
5. 기타 각종 기부금, 찬조금 및 자체수입 등의 기타수입

제19조(발전기금 조성계획) 대학원대학은 우수 학생의 확보, 우수 교원의 유치,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개정 2020.8.28.>

제20조(재정공개) 대학원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매 사업연도 결산에 있어서 대학원대학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을 공개한다. <개정 2005.12.29.>

제21조(재정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총장은 재정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학원대학운영규정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개정 2005.12.29.>

제6장 후생복지

제22조(학생장학금) 대학원대학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장학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8.28.>

제23조(학생자치기구 지원) 대학원대학은 학위과정수행의 내실화와 학생들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원만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기구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학생기숙사) 대학원대학은 학생들에게 안정된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교직원 복지) 대학원대학은 교직원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개발 등 다양한 교직원 복지를 실시한다.<개정 2020.8.28.>

제26조(학생 진로지도 및 취업대책) 대학원대학은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대책을 강구한다.<개정 2020.8.28.>

1.~4. <삭제 2020.8.28.>

제7장 중장기 발전계획

제27조(중장기 발전계획) ① 대학원대학은 교육목표 및 특성화방안 달성을 위하여 대학원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개정 2017.3.21., 2020.8.28.>

② 발전계획에는 대학 발전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한다.<신설 2017.3.21.>

③ 발전계획의 집행성과를 점검하여 지속추진을 위해 노력한다.<신설 2017.3.21.>

④ 사회 환경과 교육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발전계획을 보완할 수 있다.<신설 2017.3.21.>

제8장 보 칙<개정 2005.12.29.>

제28조(대학원대학헌장의 보완) 대학원대학헌장의 개정은 대학원대학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2008.3.20., 2013.6.25. 2017.8.10.>

제29조(공표일) 이 학교헌장은 2003년 10월 22일 공표한다.

제30조(대학원대학헌장의 효력) 대학원대학헌장은 대학원대학의 조직과 활동의 지침으로서, 대학원대학운영규정 및 학칙 등 기타 제 학규의 제정과 개폐의 기본이 된다.<신설 2005.12.29.><개정 2017.12.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헌장은 200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3. 20.>

제1조(시행일) 이 헌장은 200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 3. 30.>

제1조(시행일) 이 헌장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6. 25.>

제1조(시행일) 이 헌장은 2013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헌장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 8. 2.>

제1조(시행일) 이 헌장은 2017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 12. 20.>

제1조(시행일) 이 헌장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 8. 28.>

제1조(시행일) 이 헌장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